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82
----------	-----

제출연월일 : 2023. 9. 27.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과 상위법령인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수정·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조달을 위해 설치된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 (~2028.12.31.)(안 제11조의2)
- 나.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에서의 위임에 따라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수정(안 제3조)
- 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감면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에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수정(안 제11조)
- 라. 상위 법령인 「지하수법」에 맞게 정비(안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의2)

3. 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하수법」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3조
- 2)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 제40조의2, 제40조의3
- 3)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
- 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5) 「지방재정법」 제9조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3. 8. 21. ~ 9. 11.

나) 예고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3)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5)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의결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하수법」”을 “조례는 「지하수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을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으로,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7조 및 제13조”로, “승계 받은 자”를 “승계받은 자”로 한다.

제3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지하수관리계획”을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계획”으로, “또는”을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서구의회”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서구”를 “대구광역시 서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지하수관련”을 “지하수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 ③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행한다”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을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공무원이나”를 “관계 공무원이나”로, “행정기관”을 “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팀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작성·비치”를 “작성·보존”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과 여비)”를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여비를”을 “여비 등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소관업무”를 “소관 업무”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한다.

제11조 중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1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1호 중 “제9호까지의 규정”을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요되는 비용”을 “따른 용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여비지급”을 “여비 등 지급”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2개월분을 다음 달”을 “부과 직전 2개월분을 부과하는 달의”로, “납입고지서”를 “제19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없으면 전년도”를 “없는 경우 전년도”로, “없으면 부과”를 “없는 경우 부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경우에는”을 “경우”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25-1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로, “납입고지서에는”을 “납부고지서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금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부담금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조정신청”을 “조정 신청”으로 한다.

제23조 중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4조 전단 중 “일상생활에 음용수”를 “일상생활에서 먹는물”로,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특별회계”로 한다.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5. 다만”을 “15(다만”으로, “없다”를 “없다)”로 한다.

제25조 전단 중 “경비절감”을 “경비 절감”으로, “업무수행”을 “업무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징수수료”를 “징수 수수료”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지하수법」</u>,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지하수개발·이용자</u>”란 「<u>지하수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u>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를 <u>승계 받은 자</u>를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3조(설치) 「<u>지하수법 시행령</u>」(이하 “<u>령</u>”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u>위원회</u>”라 한다)를 <u>둘 수 있다</u>.</p>	<p>제1조(목적) -- <u>조례는 「지하수법」</u>----- ----- ----- -----.</p> <p>제2조(정의) ----- -----.</p> <p>1. “<u>지하수개발·이용자</u>”란 「<u>지하수법</u>」----- <u>제7조 및 제13조</u>----- ----- ----- ----- ----- <u>승계받은 자</u>-----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설치) ----- ----- ----- ----- ----- <u>둔다</u>.</p>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제5조(구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서구 소속 관계 공무원

3. (생략)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제4조(기능) -----

-----.

1. -----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계획
----- 및 -----

2. ~ 5. (현행과 같음)

제5조(구성) ① -----
----- 9명 -----

-----.

1.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

2. 대구광역시 서구 -----

3. (현행과 같음)

4. ----- 지하수 관련 -----

5. -----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추천하는 사람

② (생략)

③ 구청장은 지하수의 보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전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한쪽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전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해산한다.

<삭제>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청)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 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제11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의

요청) -----
----- 관계 공무원이나-----

-- 기관 -----

-----.

제9조(간사) ① -----

--- 담당팀장이 -----
-----.

② ----- 작성·보존-----

-----.

제10조(수당 등) -----

----- 여비 등
을 -----.
-- 소관 업무-----
-----.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11조(설치) -----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
3. (생략)
4. 제10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지급
5. (생략)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관리특별회계-----
----- 설치한다.

제1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14조(세출) -----
-----.

1. -----
제9호까지-----
--
2. -----
----- 다른 용도
3. (현행과 같음)
4. ----- 여비 등 지급
5. (현행과 같음)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부담금은 2개월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을 납기로 하여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④ 유량계 또는 시간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

----- 감면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 부과 직전 2개월분을 부과하는 달의 ----- 제19조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

제18조(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없는 경우 전년도 ----- ----- 없는 경우 부과----- ----- 경우 -----

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
·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9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구
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
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
칙」 별지 제25-1호 서식에 따
른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
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
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지
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
다.

제20조(가산금) ① (생략)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
야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부과액의 조정 신청) ①
(생략)

----.

제19조(부담금의 납입절차) ① --

-----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7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

---- 납부고지서에는 -----
-----.

② ----- 부담금을 「지
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 제21조-----

--.

제20조(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제21조(부과액의 조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알려야 한다.

제23조(준용) 부과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기 수질검사 수수료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 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② ----- 조정 신청-----

-----.

제23조(준용) -----

-----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수질검사 수수료의 감면)

----- 일상생활에서 먹는물-----
--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
-- . ----- 특별회계-----

-----.

제24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예치하는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
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굴착공사비 100분의 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제25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경
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의 일부
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
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1. (현행과 같음)
2. -----

----- 15
(다만-----
--- 없다)

제25조(업무의 위탁) ----- 경
비 절감 ----- 업무 수행--

-----.
----- 징수 수수료
-----.

<삭 제>

【관 련 법 령】

□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1. 1. 5.>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12. 8., 2021. 1. 5.>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2016. 12. 27.>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나 제4항

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5. 22., 2013. 8. 6., 2020. 3. 24.>

제33조(수수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제30조의2에 따른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게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2. 6. 8., 2013. 10. 30.>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군·구 지역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항
4.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특별자치시에 두는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법 제30조의2제4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22. 1. 6.>

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실시
2. 제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3.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군·구 조례로 정한 용도

제4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6. 8., 2014. 11. 11., 2016. 12. 30.>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부속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3. 생활용수 중 가정용(가정생활에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4. 상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의 간이급수시설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지열냉난방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原水)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하여,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물이용부담금의 산정 방법, 부과·징수 방법, 납입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 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기한 연장과 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한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예상 되는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환경청소과장 하경호